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020. 12. 18
조례 제950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통한 환경개선 및 자연과의 조화를 통한 증평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경교육”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한 군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며 구성원의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환경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군이 시행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 수립 등) 군수는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환경교육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1. 학교·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및 추진방향

증평군 환경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을 위한 시설 설치 및 지원
5. 그 밖의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환경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교육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각종 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
2. 환경교육 프로그램,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
4. 군민 환경교육 실시
5. 각 단체·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
6.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8조(환경교육센터 관리·운영의 위탁)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군수는 환경정책의 추진,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해 군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북도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군 소재 각 학교의 장, 환경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군수는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원활한 환경교육 및 환경개선 정책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환경교육진흥법」 제17조에 따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단체 등에 대한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비의 일부
2. 환경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체험환경교육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